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김형우・김해바른・정지광 박성준・김안숙・박미정・하서영 의원(7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출산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무원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여 직원 복지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 지원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호)

나.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근거 정비(안 제7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2자녀 이상 출산직원”을 “출산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년·명예”를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3. ---------- 출산직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 ----------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붙임]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우 의원 대표발의)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형우			
김해바른			
정기양			
박성준			
홍안숙			
박의정			
라서영			